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당신의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공·사연금 포트폴리오

본 자료는 2017년 10월 18일 웨스턴 조선포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세션 2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공·사연금 포트폴리오』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 내용입니다.

CONTENTS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공·사연금 포트폴리오

I. 개최 취지 5

II. 주요국의 공·사연금 운영 현황과 공사협력 모델 7

발표자: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과 연금세제 정책 9

발표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IV. 우리나라 공·사연금정책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11

발표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공·사연금 포트폴리오

V. 토론내용 요약 13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좌장)	13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제고 관련	13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13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4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5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16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16
2.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17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7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8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19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19
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도입 등	21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21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1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2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22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22

I. 개최 취지

-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는 이를 충족시킬 복지재원과 노후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우려된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을 하였지만, 여전히 2060년에 기금소진이 우려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줄어든 보장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연금 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들도 나오고 있음
- 공적보험을 통한 노후준비 강화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적보험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사적보험의 역할 제고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임
- 이에 본 세미나는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 신정부의 건강보험 및 연금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됨
 - 제1주제 『주요국의 공·사연금 운영 현황과 공사협력 모델』에서는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우리나라에 도입 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공적연금의 보완적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
 - 제2주제 『주요국의 퇴직연금과 연금세제 정책』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한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연금세제 유형에 따라 지원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함

- 제3주제 『우리나라 공·사연금정책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서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 내실화 유도, 연금세제 지원 강화, 자산운용 효율화, 가입자 수급권 보호, 연금화 유도 등을 제시함

II. 주요국의 공·사연금 운영 현황과 공사협력 모델

발표자: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 (리스터연금 도입배경)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 대안모색 차원에서 도입
 - 보험료를 조정보다는 급여를 감액하는 방향에서 공적연금을 개혁하였음
 - 줄어든 공적연금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리스터연금(자발적 가입)을 도입

- (리스터연금제도 특징)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임의가입하되, 세제혜택(소득공제)과 보조금을 제공
 - 공적연금에 적용 제외되는 공공부조 수급대상자와 공적연금 수급자는 적용에서 제외됨
 -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보조금은 자신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수당과 자녀수당의 형태가 있음
 - 리스터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소득재분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지원수준이 증가함
 - 고소득층은 보조금 혜택을 제외한 소득공제혜택만 존재

- (리스터연금 성과 및 한계) 리스터연금 도입 후 가입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가입 및 급여수준이 낮고, 수수료가 높다는 한계가 있음
 - 2001년 도입 이후부터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요소가 됨
 - 그러나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가입률은 적고, 급여수준도 2011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낮은 수익률, 높은 수수료 문제,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도 제도 확대의 한계로 지적됨

■ (시사점) 우리나라에 적용 시 전제조건으로 적극적 재정조치와 함께 규제가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착이 전제된 후 도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
- 또한 현행 개인연금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즉, 개인연금의 판매 및 중개수수료 안정화,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접근 개선 등)
- 끝으로 공·사연금의 상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공·사연금 연금포털 구축, 공동 홍보 등)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과 연금세제 정책

발표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과제) 한국의 고령화 / 노인빈곤 / 연금수급률을 제시함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법정 및 실적퇴직연령을 성별로 비교하여 제시함
 -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제시하고,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후소득보장 관련 현황 및 급여수준을 언급함
 - 또한, 복지부담과 관련하여 국민부담률, 세수비중 추이 등도 언급함
-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연금유형별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명함
 - 연금유형별(예, 공적연금 혹은 사적연금 비중이 높은 국가군)로 구분하여 선진국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유형화하여 제시함
 - 특히,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미국,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3층 연금체제로 도식화하고, 선진국 노후소득보장의 다양성을 언급함
- (주요국의 퇴직연금제도)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를 비교하는 형태로 제시함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저조함을 제시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일환으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함
 - 또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한계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적고, DB에 비해 DC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임을 지적함

- 선진국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일본은 과거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을 통합하여 피용자 연금을 일원화한 것을 소개하였고, 독일, 미국, 호주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 및 개혁 내용을 언급함

- (주요국의 연금과세제도) 선진국은 소득공제를 통해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의 세제지원효과를 유형별로 제시함
 - 공·사연금의 세제지원이 대부분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사적연금 세제지원 방식은 EET형이 대부분임
 - 특히, 퇴직연금 세제지원은 퇴직연금 종류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 효과도 다를 수 있음을 OECD에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설명함

IV. 우리나라 공·사연금정책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발표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노후소득보장 제고 필요성) 고령화, 복지재정 악화, 노후준비 미흡에 따른 사적연금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함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 유지가 장기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 및 공적연금 악화로 노후소득보장의 공적기능이 악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공·사연금체계)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공·사연금체계와 현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제도가 잘 갖추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각지대, 재정문제, 급여수준의 문제가 존재함
 - 공적연금제도도 복지재정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적연금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언급함

- (사적연금 문제점) 사적연금 활성화의 문제점은 낮은 가입률과 유지율, 연금화 미흡 등에 기인함
 - 가입률의 경우 특히 저소득층 가입을 낮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유지율이 낮은 이유로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해지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원리금 상품에 주로 투자되어 수익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 또한 연금세제지원이 적고,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기능도 취약함

- 한편, 수급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 현상이 강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한계가 있음

- (사적연금 역할 제고 방안) 이러한 사적연금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분야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가입내실화 유도) 사업장 가입 의무화 도입 등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
 - (연금세제 지원 강화) 일시금의 세제혜택 축소와 연금세제 혜택을 증대하여 가입을 유도
 - (자산운용 효율화) 디폴트옵션 도입 등과 같이 안정적 수입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 (가입자 수급권 보호)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 장치 마련으로 제도 건전성 강화
 - (연금화 유도) 수급 시 자동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V. 토론내용 요약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좌장)

■ 크게 3가지 주제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TOPIC 1)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 신정부 도입 이후 국민연금 보장성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가동되어 내년 3월에 추계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임
- (TOPIC 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역할분담 방안
 - 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에 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2015년 6월 자동폐기됨
 - 고용노동부가 8월 말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예고를 한 상황에서,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 (TOPIC 3) 정부지원을 통한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와 같은 사적연금제도가 준공적연금제도로써 가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은?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제고 관련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재인상(40% → 50%)과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인상임
- 기초연금 급여수준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의 노후소득문제가 심각하나,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정책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둘째, 급여수준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을 위해서는 15~20% 수준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동 제도의 시행목적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제도 설계상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실제 가입기간이 짧다는 데 있음
 -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행은 1999년부터여서 평균 가입 기간이 10여 년에 불과함

- **연금재정이 균형을 이루고 후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되어야 함**

- 현재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의 기여율을 2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 현행 보험료율은 9%로, 30년 납부 후 65세부터 20년 동안 30% 정도를 받게 되는 구조임
 - 이에 따라 급여수준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여율 인상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함

- **연금개혁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더 이상의 기여율 인상*이 불가능하므로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에서는 기여율이 20% 수준에 달함

- 이에 따라, 향후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사적연금제도, 가족기능 부활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과거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이전에는 가족 내 사적 이전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져 왔음
 - 최근에는 저출산에 따라 가족이 붕괴되고 있으나, 일본이나 타 국가 등에서는 가족기능의 부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신정부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계획은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임
- 소득대체율 40% 수준은 액면상으로 보았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보험료 대비 급여수준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보장 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보험료에 대한 고려 없이 급여수준만을 높이면 재정안정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복지제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사적연금에서의 수지상등의 원리를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급여수준 50%에 대한 적정성 및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급여수준 50%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 시에는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하여 전반적인 공적보장수준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점진적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 국민연금의 평균적 소득대체율은 40%라고 하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명목소득대체율은 그 나라의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급여수준을 의미함
- 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그 나라의 평균소득자가 실제로 가입하고 있는 평균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 정도인데 반해, 선진국의 경우 30년 정도에 달하고 있음

- 즉,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제도가 오래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짧아서 실제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이 아님

- 또한, 주요 국가와의 급여수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공적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지는 않음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평균적으로 40만 원을 수령하고, 기초연금을 통해 2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과 독일의 월 평균 연금급여액은 각각 \$1,100, €870 수준으로, 미국과 독일의 국민소득수준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연금액과 큰 차이가 없음

- 타 국가의 국민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보험요율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은 낮지 않음

- 주요 선진국은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높게 설정되어 있으나, 퇴직연금의

보험요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음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8.3%를 부담하고 있어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보험요율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국민들이 받아가는 급여가 낮고 연금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나쁘지는 않음
- 무엇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감안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심도있는 판단하에 국민연금의 역할을 조정해가는 차원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는 적절히 설계되어 있으나, 제도 적용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음
 - 임금근로자 중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며,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적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현재의 재정보다는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었을 때의 재정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미래 재정부담 절감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 개인이 소득이 적어서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나, 이들이 노후가

되었을 경우 노후자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의무화, 퇴직연금제도 도입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입자의 많은 부담이 수반되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채찍(가입의무화)과 당근(세제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수익이 없고 저소득층은 세금부담이 없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근퇴법의 개정 등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의무화, 처벌규정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국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임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1) 자본시장 활성화, (2) 투자수익률 제고, (3) 주인·대리인 문제 해소 등을 들 수 있음
- 퇴직연금운영을 기금형과 계약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기금형 제도가 가진 문제점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수익률 제고는 시장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제도 도입 논의가 자본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출발함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특정 업권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 시 금융회사보다는 근로자 및 노동자단체의 제도 개선 요청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외국에서의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함
- 적립금 규모보다는 수익률이 연금수령 결정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억 이상 고액적립금 보유한 사람의 경우 일시금보다는 연금수령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익률이 연금과 일시금 선택 과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중간정산이나 이직 시 일시금 수령을 허용으로 적립금이 많이 쌓이지 않아 연금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중간소득자 이상에 대한 금지 또는 적립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인출허용 등 강제저축에 대한 방안 등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모든 계층에 대한 연금가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그 대상을 줄여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임
 - * 저소득층(하위 30%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기초연금 통한 지원방안 강구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연금화하려는 근로자의 의사가 낮으며, 낮은 수익률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아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생애주기상 퇴직시점에 자녀학자금, 자녀결혼, 주택자금 등 현금에 대한 수요가 큼

-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피용근로자 1,700만 명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연금화하려는 근로자의 의사가 낮으며, 낮은 수익률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미가입자의 비중이 높아 노후소득보장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2,600~2,700만 명) 중 피용근로자(사업주에 종속된 노동자)는 1,700만 명이며, 이 중 1,200만 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피용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800만 명 수준이며,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로 200~250만 명 정도로 추산됨

-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노후소득보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내실화와 더불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내실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퇴직연금을 “이연연금”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퇴직금·퇴직연금은 1년 이상 재직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전체근로자 1,700만 명 중 퇴직연금제도 대상자는 800만 명으로, 나머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임
 - **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더라도 가입자격을 부여함
 -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퇴직연금 가입요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함

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한국형 리스터연금제도 도입 등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 전 세계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정액보조금, 정률보조금 등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사례가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부여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정률보조금을 지급하는 영국이나 뉴질랜드의 경우도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반해, 독일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리스터연금은 타 방식에 비해 가장 큰 성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리스터연금의 경우 기업부담이 없고, 저소득층의 혜택이 크며, 소요되는 자원규모가 작은 장점이 있음
 - 기업 대신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없음
 -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자영업자가 많고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 도입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
 - 추산 결과, 6,000억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10%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함
 - 개인연금시장의 경우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나, 리스터연금의 경우 인증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연금 의무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나,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세제부담이 없다는 점이 문제임
-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를 없애는 대신 연금과 노후보장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과세기반 확대와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저소득층의 경우 나중에 기초연금 등 기초보장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현재 지출을 통해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과적임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리스터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사연계연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리스터연금은 준공적연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수지상등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특성과 임의성을 가진 사적특성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적격개인연금을 독일의 리스터연금으로 진화·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개인의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리스터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 퇴직연금 사회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한 해지 허용 또는 연금납부대출 등의 허용 등이 필요함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 리스터연금제도의 도입 논의는 의미가 있으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사각 지대가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조치없이 개인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뒤쳐질 수 있음
- 중·고소득층(250~300만 명) 근로자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적격개인연금의

정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계좌로 환급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노후자금이 더 많이 축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공·사연금 포트폴리오

발행일 | 2017년 11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